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64
----------	-----

2025. 3. 21.(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2025년 3월 13일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유상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안 제3조제3항)

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개정이유 검토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12.)에 따라 변경된 사항¹⁾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²⁾ 등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및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따라’ 를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으로 개정한 것이며
- 안 제3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폐 청구)’ 를 ‘제19조(조례의 제정과 폐폐 청구)’ 로 “주민은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따로 정한다” 는 내용으로 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조항이

1)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바뀌었으며

- 안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를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또한, 그 밖에 사전절차 및 입법안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등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관련 집행 부서와 협의,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2012년) 이후 상위법이 2021년 개정되었지만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빠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의3 및 제132조에 따라”를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및 제132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 -----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 제19조----- ----- ----- -----.
제7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	제7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 ----- 「지방자치법」 제148조----- ----- -----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교육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